

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4. 2. 11.(2004. 2. 12.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III. 근거법령 :

IV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전용문화공간인 “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”이 시내 권(창전동)에 신축 조성됨에 따라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제2조중 명칭과 위치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
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창전동 420-8
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-9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전용문화공간인 「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」이 창전동에 신축 조성됨에 따라 이천시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2조중 명칭 「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」과 위치 「이천시 창전동 420-8」를 신설한 조례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